<표 1> 기상특보 발령기준

종류	주의보	경보
태풍	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,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	대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(또는 풍랑)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강풍	육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.0km/h(20m/s) 이상 예상될 때.	육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.6km/h(26m/s) 이상 예상될 때.
풍랑	해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이 3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이 예상될 때	해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
폭풍 해일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 이 예상될 때.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 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.
호우	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	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
대설	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	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.

- (다) "트렌치 굴착"이라 함은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도랑 형태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.
- (라) "흙막이 지보공"이라 함은 지하구조물 시공을 위해 지반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굴착공사 중 굴착벽면의 무너짐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.
- (마) "변위"라 함은 구조물이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은 변형하고, 그 임의의 점은 각각 어느 양만큼 원위치에서 이동하는데, 이 이동 또는 이동량을 말한다.
- (바) "흙막이 판"이라 함은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 재를 말한다.
- (사) "인화성물질"이라 함은 대기압(1기압)하에서 인화점이 65℃ 이하의 가연성 액체로서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불꽃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인화 연소하며 인화점이 높은 물질도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시키면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. 인화성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